

우수문화상품 지정서

신청인	업체명	
	대표자 성명	
지정내용	제품명	
	용도	
	사용 원재료	
	제품규격	
지정번호		

귀하가 제출한 상품이 심사 결과 위와 같이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되었으므로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특별시장·광역시장·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